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4. 30.  
사회건설위원회

##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2023년 10월 10일
-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3년 10월 19일
- 라. 상정일자: 제248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3.10.23.) 상정 “보류” 의결  
제251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4. 26.)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국장 김일호)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청사건립기금을 공용 청사를 비롯한 공공용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확대 조성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 “공용 및 공공용의” 명시(안 제1조, 제3조, 제6조)
- “공용 청사 및 공공용 청사”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인원·대상, 기능 정비(안 제11조, 제12조)
- 띄어쓰기 수정, 용어 통일 등 전반적인 조문 정비(안 제7조, 제13조 등)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청사건립기금을 공용 청사를 비롯한 공공용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확대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으로

- 기금의 대상 범위를 기존 “구청, 보건소, 구의회”와 더불어 “동주민센터” 및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용 청사로 확대함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 또한 기금의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 11조에서는 위원회의 명칭 개정 및 위원회의 구성 인원·대상을 확대 정비하였고,
- 안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예비비 편성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서 “예비비 지출”을 삭제하여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였음.

#### ○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기금을 폐지하거나 기금 간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재 서울시 자치구 청사건립 관련 기금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를 포함 15개의 자치구에서 청사건립기금을 운용 중으로 그 중 10개의 자치구에서 “공용 청사”와 더불어 유사한 성격의 “공공용 청사”까지 기금의 대상 범위로 정하여 한 기금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음.
- 이에 본 안건은 공용 및 공공용 청사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효율적 재원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대상 범위를 확대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 범위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47 호
----------	---------

제출연월일: 2023. 10.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청사건립기금을 공용 청사를 비롯한 공공용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확대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 나. “공용 및 공공용의” 명시(안 제1조, 제3조, 제6조)
- 다. “공용 청사 및 공공용 청사”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라.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인원·대상, 기능 정비(안 제11조, 제12조)
- 마. 띄어쓰기 수정, 용어 통일 등 전반적인 조문 정비(안 제7조, 제13조 등)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3) 위원회 운영사항 검토: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2023. 9. 7.~9. 27./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영등포구 청사건립재원”을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재원”으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을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용 청사”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청, 구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를 말하며, “공공용 청사”란 구에서 건립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구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청사를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청사”를 각각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담당과장으로”를 “담당 과장으로”로, “담당팀장”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등포구”를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인”을 “15명”으로, “외부위원이”를 “민간전문가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외부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의회 추천 구의원 2명

나. 기금 관련 분야 또는 청사 건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제1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3조제1항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의회”를 “위촉직 위원 중 구의회”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구의원과 외부위원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촉직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u>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u>영등포구 청사건립</u> <u>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u> 서울특별시 <u>영등포구 청사건립</u> <u>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청사”란 <u>영등포구본청, 영등포구보건소, 영등포구의회의 건물과 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u></p> <p>제3조(기금의 설치) ①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u></p>	<p><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p> <p>제1조(목적) ----- ----- ----- <u>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재원</u>----- ----- <u>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용 청사”란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청, 구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를 말하며, “공공용 청사”란 구에서 건립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구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청사를 말한다.</u></p> <p>제3조(기금의 설치) ①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u></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생략)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2. 청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생략)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생략)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용도) ----- 다음  
-----  
-----  
--.

1.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  
-----

2.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  
--

3.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  
-----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담당 과장으로-----  
-- 담당 팀장-----.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 영등포구 공용 및 공공용의 -----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위원

<신 설>

② ----- 15명 -----

민간전문가가 ----- . --

-- 위촉직 위원-----  
-----.

③ -----  
-----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의회 추천 구의원 2명

나. 기금 관련 분야 또는 청사

④ (생략)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2. (생략)

3.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5. (생략)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과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건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기능) -----  
-----  
-----.

1. 2. (현행과 같음)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5.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

② 위촉직 위원-----  
-----  
-----.

③ ----- 위촉직 위원 중 구의회-----  
-----.